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5월 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5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5. 13) 상정

○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5.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국제통상과장 이 중 훈)

가. 제안이유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등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조정함

(안 제3조)

○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위원의 신분변동 및 임기 만료 도래로 인한 해촉에 관한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2002년도 협의회 운영 횟수는? <input type="radio"/> 협의회 운영시 주 토의내용은? <input type="radio"/>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할 용의은?	<input type="radio"/> 2회 운영하였음. <input type="radio"/> 협의회 운영시 주 토의 내용은 - 자매 우호도시 교류 협력방안 - 교류내용 성과 분석 - 개선방안 제시 - 협력분야 협의 등 <input type="radio"/>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수정의결

6. 수정안의 요지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직위에 있는 위원이 그 직위를 사직할 경우 당연 위원 사직이 바람직 함
- 현 직위와 여성위원 비율 등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 적정 위원 수 유지가 타당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14호
의결연월일	2003.5.15 (제104회)

제안년월일 : 2003년 5월 14일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협의회 위원 위촉시 민, 관, 산, 학계의 대표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촉 사유 발생시 신속한 해촉으로 신규위원의 원활한 위촉과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함.
- 회장, 부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장기 역임보다는 위원 상호간 순차역임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지나, 위원의 임기에 연임 제한을두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위촉권자인 시장이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 정례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로 하여 시기성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협의회 구성 위원은 "시의회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를 "시의회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민, 관, 산, 학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으로서로 조정함 (안 제3조제1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조정함(안 제4조제4항)
- 정례회 시기를 "연2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로 조정함 (안 제6조제2항)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민, 관, 산, 학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 한다

안 제4조제4항중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중 "연2회"를 "상·하반기 각 1회"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p> <p>②위원은 시의회의원 3인을 포함하여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제3조(구성)</p> <p>②----- -----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u> ----- ----- -----.</p>	<p>제3조(구성)</p> <p>②----- ----- <u>민, 관, 산, 학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u> ----- ----- -----.</p>
<p>제4조(회장, 부회장의직무 및 임기) <u><신 설></u></p>	<p>제4조(직무 및 임기)</p> <p>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제4조(개정안과 같음)</p> <p>④----- --- <u>연임 할 수 있다.</u></p>
<p>제6조(회의)</p> <p>②정기회의는 <u>분기마다 1회</u>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제6조(회의)</p> <p>②-----연2회----- ----- ----- -- <u>소집할 수 있다.</u></p>	<p>제6조(회의)</p> <p>②----- <u>상·하반기 각1회</u> ----- ----- -----.</p>

[수정안 포함]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5인”을 “20인”으로 하고 제2항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민·관·산·학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 하며, 제4조 제목 “회장, 부회장의 직무 및 임기”를 “직무 및 임기”로 하며 제3항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중 “분기마다 1회”를 “상·하반기 각 1회”로 하고 “소집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의 신분변동이나 임기가 만료될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회장 등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협의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u>1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결한다.	제3조(구성)----- ----- <u>20인</u> ----- -----
②위원은 시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u>민·관·산·학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u> ----- -----
제4조(회장,부회장의 직무 및 임기) ① 및 ② (생략)	제4조(직무 및 임기)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u>2년으로 한</u> 다.	③----- <u>2년으로 하되</u>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신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생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u>상·하반기</u> 각 1회 ----- ----- <u>소집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생략) 1. 및 2. (생략)	제10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 및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위원의 신분변동이나 임기가 만료될 때</u>
3. (생략)	4. (중전의 제3호와 같음)